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과 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의 처 분성을 부정한 사례

2023.01.31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하 ‘공기압밸브’)를 생산하여 국내에 수출하는 일본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일본국 내 정상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기압밸브를 수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등에 따라 덤핑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51조를 근거로 2015. 8. 19.부터 5년간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공급하는 공기압밸브에 대하여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고는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시행규칙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피고(기획재정부장관) 및 피고보조참가인(무역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는 위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었고, 대법원은 ①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③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종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위법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이러한 시행규칙의 처분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하급심 판결 대부분은 이러한 시행규칙이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① 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5누21950 판결), ②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선고 2006구합29782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누3618 판결)}, 처분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해왔고{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7439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3787 판결)}, 그러한 각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처분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4953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앞서 본 요지와 같이 위와 같은 시행규칙은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기존의 법리(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를 재확인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구성원

조춘

변호사

02-316-4213

ccho@shinkim.com

오행석

변호사

02-316-1618

hseoh@shinkim.com